

# 「너스·프랙티셔너」?

## Nurse Practitioner?

서울대보건대학원조교수 李 善 子

“Nurse Practitioner”란 單語는 關心이 많았던 분들 몇분을 除外하고는 看護員 生活을 오래하신 분들의 경우 조차도 친숙한 單語아닌 생소한 用語라는 點에서 本欄을 「대한간호」誌에서 할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Nurse Practitioner”가 우리말로 어떻게 불리우는 것이 좋을지에 對해서도 未定입니다. 「診療看護員」「간호간호사」「간호진료사」等 그 호칭도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Nurse Practitioner”란 用語가 그만큼 생소한 것은 1975年 12月에 大韓保健協會가 主催한 公開討論會에서 「우리나라의 醫療傳達制度와 새로운 保健要員의 活用」이란 내용의 討論에서 MEDEX 이 야기가 論議됨과 떼를 같이하여 이제까지 美國에서만 있던 “Nurse Practitioner”에 對해서 保健分野에 계신 분들과 看護員들이 關心을 보이기始作했기 때문입니다.

現行 우리나라의 醫療傳達制度에 對한 再檢討와 새로운 保健要員의 活用方案에 對한 것이 問題가 되기始作한 動機는 「健康은 基本人權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權利로서 主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現在의 비싼 醫療費 부담에 對하여 國民들은 批判的이며 이에 對한 解決策을 政府가 해주길 바라고 있고, 또 農漁村住民에게는 滿足할만한 惠澤을 주지 못하고 있는 不足한 保健醫療資源과 施設, 都市 偏在狀態를 보이는 醫療施

惠의 不均衡, 人口膨脹 및 人口構造上의 變化에 따라 健康要求의 變化에 따른 문제와 死因類型이 變化로서 傳染病性 死亡原因이 主原因이던 것이 점차 成人病, 慢性病으로 變하는데 대한 대처, 醫療保險制度의 확립 음직임, 工業化, 產業化에 따른 各種 公害問題와 環境保護問題等을 國民들은 時急히 解결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社會保障에 대한 갈망도 갖고 있어서 政府도 이러한 點에 착안하여 이제까지 第三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에서는 經濟成長에 重點을 두어온 政策을 第四次 五個年計劃에서는 社會開發에도 큰比重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76年 保社部 施策目標에서도 이러한 政策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即 醫療施惠의 均衡, 國民保健의 向上, 生活環境의 改善, 綱民生活의 安定, 社會福祉의 增進, 社會氣風의 醇化, 海外移住의 促進等입니다.

이와같은 政策을 效果的으로 達成시키기 爲한準備로 政府는 AID로 부터 500萬美元에 達하는 保健借款을 導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借款을 投資하기 爲한 投資者側에서 二年前에 事前調查팀을 한국에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카운터 파트팀과 共同조사를 실시하여 報告書를 作成한 후 우리나라 政府에 제출하였습니다. 同報告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Nurse Practitioner”제도가

실시 가능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政府는 同 報告書를 참작하여 効率的으로 일할 수 있는 機構를 發足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1975年 9月 30日字로 통과된 保健開發研究院法으로서 1976年 4月에 發足 豫定으로 되어 있읍니다. 1976年 3月 11日 同法에 對한 시행세칙이 經濟長官會議를 통하여 綜合保健醫療 示範事業에 종사 하는者에 對하여 ①豫防接種 ②外傷等의 응급처치 ③피임제의 지급 및 피임기구의挿入 ④正常分娩 介助 ⑤其他 保社部長官이 승인한 診療指針書에 依하여 醫師가 書面指示한 輕微한 診療行為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행위의 特例等을 規定함으로서 "Nurse Practitioner"에 대한 시범 사업을 통한 제도적 채택을 法的으로 可能하게 하였읍니다. 그러면 美國에서 "Nurse Practitioner" 제도가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소개 함으로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 드릴까 합니다.

### ■ 역사적 배경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의료제도 개선문제를 연구해온 나라로서 미국의 예를 들면 the Secretary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서 빈 보고에 의하면 미국은 1960년대 중반기에 사회적 요구에 의해 Primary Medical Care의 전달에 치중되었읍니다. 의사들의 지역적 이상 분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의사생들은 졸업후 일반적 속현보다 전문분야로 들어갔으며 일부만이 Family Care의 일차적인 차원으로서의 소아과 의사나 Internists로 남아 있을뿐이었읍니다.

일반주민들 특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는 주민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은

일차적 간호의 형과 질에 對하여 질문을 해 왔습니다.

이즈음 수 많은 잘 축련된 위생사병들이 군에서 제대해 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일부는 월남의 마을에서 의사나 간호원의 역할을 해 왔읍니다. 민간의료의 요구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인력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였읍니다.

그런데 간호교육이나 간호실무는 학사나 석사 학위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병원 중심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확대된 간호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읍니다. 이 시기에 Medical care 비용은 외래환자나 입원환자 어느쪽으로나 급등하였고 특히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일반적 여론은 의료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입원보다는 병원 외래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하여 보건인력의 전통적 두 형태 즉 간호원과 위생사병을 이용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질을 유지 시키며 치료비를 감소시킴으로서 사회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개발이 모색된 것 입니다.

### ■ 프로그램(Program)의 시작

첫 Nurse Practitioner Program은 보건간호전달이 가장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역인 소아과에서 조용히 시작 되었읍니다. 보건간호원 (public health nurse)들은 전통적으로 건강한 아기 (well baby)들에 대한 간호에 집념하여 왔었읍니다. 실제적으로 간호원에게 영유아의 신체검사 (physical examination)와 간단한 질병 (minor illnesses)의 치료를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 (program)을 개발하는 것은 조그만 진전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그러한 교육은 1965년 Colo-

rado 대학에서 Ford 와 Silver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교과과정의 강의 부분이 4개월에 20개월간을 의사의 감독하에서 실습하여 소아과 의사한테서 실습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졸업생들은 Pediatric Nurse Practitioner 라고 불렀습니다. 그후 부모들이 이를 PNP를 환영하여 받아들이었고 소아과 의사들로 부터 실습이 증가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졸업생들의 실무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이 유사한 계획들이 여려 곳에서 시도되게 되었습니다.

### ■ Physician's assistant

상기와 동시에 Lewis 와 Resnick 가 Kansas 대학교에서 외래진료실의 만성질병을 가진 환자의 처치를 간호원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를 의사에 의한 처치와 비교하여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간호 영역개발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Research"라고 불리워졌으며 이것이 조그만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쨌던 그것이 장기질병을 가진 환자치료에서 간호와 의료요소를, 제례의 의사증상 치료비와 비교한 간호원에 의한 간호와 의료요소를 합친 전 치료비와의 충돌을 확인한 첫시도였습니다. 즉 간호원들이 의사보다 그들의 환자를 더 자주 보아오는 동안 의사들은 환자들을 가끔 보기 때문에 의사에 의해서만 치료를 받아온 환자의 경우가 입원 기간도 길어졌으며 치료비도 더 많아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Physician's assistant의 경우도 제도적으로 가능성인 의료전문인과 주민들에게 의하여 조사연구 되어야 했습니다. Physician's assistant 역시 의사로부터 실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에서 뿐 아니라 Russia 의 Feldshers 와 중국(China)의 Bare Foot doctor

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의사들은 정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아닌 의사로서 시골의 주민들을 위한 일차적 건강 보호자로 일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러시아나 中共으로부터 미국으로 전너왔는지는 모르나 이제까지 간호원 면허에 의해서만 일해 온 간호원들에게는 Pediatric Nurse Practitioner 나 Physician's assistants 는 새로운 건강간호자로서 합법성을 소지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합법성 여부 즉 이들의 기능에 대한 적격여부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1965년 Duke 대학에서 physician's assistant program 이 시도되었는데 여기서는 보건에 관련된 Background 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2년제 대학과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Washington 대학교의 Program 으로 군대에서 "Independent duty" 를 위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은 바 있는 전직 위생병들만을 입학시킨 것으로 이것이 바로 MED-EX Program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보건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촌에서 의사들이 근무할 때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이미 어느정도 되어있는 학생이 입학 할 수 있었고 3개월 강의와 12개월 실습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 두 대학교의 Model program 의 차이점은 별로 없었으며 일차적 건강간호 전달에 보통적 교육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Nurse Practitioner 나 Physician's assistant program 에 대하여 비록 소수의 간호원들이지만 현재까지 하던 간호원의 영역에 의사의 역할이 추가되는 데 대한 반발과 동요가 일부 간호원 중에서 일어 났습니다. 즉 1970년 미국의사협회(AMA)에 의하여 "의사의 조력자"는 시대에 맞는 개념이라고 10만명을 준령시키겠다고 공포했을 때 미국간호협회(ANA)

에서는 그 역할의 범위보다는 호칭에 반발을 보였고 또 다른 반응은 그러한 칭호보다는 Nurse Practitioner로 부르려면 이 새로운 역할을 위한 보다 많은 교육과 숙련이 먼저 연구 검토된 후에라야 한다는 암시였습니다. 드디어 1971년 간호원의 확대된 역할에 대해서 미국의 보건교육 후생성(HEW)에서 연구검토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이 위원회에서는 합법성(면허증)문제, 지역주민의 반응도, 의사와 간호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개념차이에 따른는 갈등과 마찰문제, 훈련 및 교육계획, 역할의 제도화나 체계화문제, 호칭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의 해결책으로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Nurse Practitioner는 주민들의 일차적 건강 관리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Nurse Practitioner가 주민들의 일차적 건강관리를 위해 일하게 될 경우 일차적 건강관리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 일차적 건강관리

일차적 건강관리에 있어서 간호원은 상대적 독자적으로 기능을 가지며 의사와 공동연구로서 환자의 가정중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고립된 시골이나 빈민지역 또는 최근의 Clinic 병원, 지역사회보건소에서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발견 예방적사업 및 환자를 감별진단하여 간단한 질환의 치료, 환자를 필요시에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사회봉사단체나 기관에 의뢰,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조언이나 상담, 정상임부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섭생감독, 그리

고 건강에 관계되는 지역사회 활동교육에 참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 간호를 위해서 간호원은 충분한 지식과 필수적인 숙련을 갖추어 아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1) Health history taking을 담당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의사가 담당하면 것입니다.
- 2)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건강간호요구에 대한 평가로서 정상과 비정상의 증상 발현 범위를 알아낸다.
- 3) 환경조사로서 가족의 유대관계, 가정, 학교, 직장의 환경등을 조사한다.
- 4) 검사소견의 결과를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하여준다.
- 5) 선택된 치료의 시작과 진단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다.
- 6) 지역사회자원과 건강간호요구에 대하여 사정을 내린다.
- 7) 적절한 응급처치의 대비 (Cardiac arrest, 출혈)하고 필요시에 적절한 처치를 한다.
- 8) 진단이나 치료계획에 대한 환자나 그 가족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준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사부에서 의료 시혜평준화 방침의 일환으로 특히 농어촌주민의 일차적 건강관리를 전료간호원으로 하여금 전달도록 하고 의사의 재집진이 필요한 환자는 임근 치료기관에 의뢰시키도록 제도화할 것을 추진키로 하는 계획에 따라 보사부는 77년부터 80년까지 매년 300명씩, 81년에는 347명 등 총 1,597명의 간호원에 대한 특수교육을 지정병원 또는 시, 도, 중앙병원에서 3개월간씩 실시하여 78년에 4,071명 (22.4%), 79년에 8,143, 200명 (44.8%),

80년에 12,214,800명(67.2%), 81년에 16,286,400명(89.6%)의 농어촌 주민에 의료혜택을 주기로 하는 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이 案의 시행여부는 미정으로 알고 있으며 수정검토가 앞으로 되어 질 것으로 필자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거제 건강원에서 Nurse Practitioner 교육훈련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1976年부터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여러가지 당면한 보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있어 간호원으로서 일차적 관리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보건의료혜택을 모든 주민에게 풀고 둘 수 있는 의료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간호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며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건강간호사 제도에 있어

- 1) 신설의료제도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청호문제.
- 2) 의사와 간호원간의 상호협조문제.
- 3) 배우, 이직(移職) 그리고 양성문제.
- 4) 정체적인 뒷받침과 정책수립의 참여문제등이 논난의 대상으로 예상되며 간단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짧은 시일내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Nurse Practitioner"에 대한 소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 〈참고문헌〉

- 1) 정희섭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나의 私見", 대한 병원협회지, 대한병원협회, 제4권 4호, p.18, 1975. 4.
- 2) 이경식, "확대된 간호원의 역할", 보건간호원론,

- 대한간호협회, p.63. 1971.
- 3) 이선자, "지역사회 건강간호를 위한 간호교육과정", 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교육,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중보건학 연수회, 1975. 4.
- 4) Weston, J. L. "Whither the Nurse in Nurse Practitioner?" Nursing Outlook, AJN Co. Vol.23, No. 3, March 1975. p.148-150
- 5) 이영순 외 4人: "일차적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원의 역할" 보건간호 이수과정 세미나보고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1975.
- 6) Secretary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Extending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AJN Vol. 71, No. 12, December 1971. p.2349
- 7) 의협신보, 1975년 10월. 30日字:
- 8) 김보임, "간호원의 확대된 역할에 대하여" 열세대 간호대학 간호학 학회보, 제5호, 1974
- 9) APHA-PHN Section Committee Report, "The PHN Specialist" August. 1970.
- 10) Bullough, Bonnie; "Is the Nurse Practitioner Role; A Source of Increased Work Satisfaction?" Nursing Outlook, Vol. 23, No. 1, Jan- 1974. p.14-19
- 11) Cady, Louise "Extending the Role of Public Health Nurses" Nursing Outlook, Vol. 22, No. 10, October 1974.
- 12) Skrovan, Anderson, Gottschalk, "Community Nurse Practitioner; An Emerging Role" AJPH. Vol. 64, No. 9, September 1974. p.847-853
- 13) Archer, Fleshman. "Community Health Nursing- A Typology of Practice" Nursing Outlook, Vol. 23, No. 6, June 1975.
- 14) O'Brien Margaret and others, "Expanding the Public Health Nurses Role in Child Care" Nursing Outlook, Vol. 23, No. 6, June, 1975
- 15) Yankauer, Alfred. "The Outcomes and Service Impact of a Pediatric Nurse Practitioner Training Program Nurse Practitioner Training Outcomes" A.J.P.H. March 1972, p.347